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년월일 : 2001. 7. 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129호)에 의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 통일
- 나. 정부의 전자정부구현으로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 자동발급 되는 추세에 따라 각종 증명서에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규정 신설
- 다.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시에 부산광역시에 신고조항 삭제

2. 주요골자

- 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 통일 (안 제2조제7항, 제2조제8항, 제9조, 제15조제3항)
- 나. 각종 증명서에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규정 신설 (안 제2조제8항)
- 다.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시에 부산광역시에 신고조항 삭제 (안 제10조)

3. 관계법령

- 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6조, 제41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항의 본문중 “전자공인”을 각각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하며 동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구청장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운용을 위하여 민원 증명용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제9조의 본문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3항의 본문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 ⑥ (생략)</p> <p>⑦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사업소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⑧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p> <p>제9조 (공고) 공인을 신조 · 각인하거나 개인,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인은 제외한다.</p> <p>제10조 (신조 또는 개각된 공인의 등록 신청 및 공인 폐기 신고)</p> <p>① 신조 · 개각 또는 폐기되는 구청장 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공인인영 (신조, 개각 공인과 폐기 공인 구분) 3부를 첨부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 폐기 즉시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p>	<p>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전자이미지관인”-----, 전자 이미지관인----- -----</p> <p>⑧ 구청장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운용을 위하여 민원증명용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p> <p>제9조 (공고) ----- ----- ----- 전자이미지관인-----</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5조(공인의 날인) ① ~ ② (생략)</p> <p>③ 구청장, 동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또는 합의회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공인 포함)을 찍어야 한다. 이때 공인날인 대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 이미지 서명 포함)을 해야 한다. 다만, 민원사무를 제외한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p>	<p>제15조(공인의 날인)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전자이미지관인 ----- ----- ----- ----- ----- ----- ----- ----- -----</p>